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고요구 불이행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제재 감경〉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1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19.
3.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수출·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를 감경함.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제30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 <u>거짓으로 한</u>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③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¹⁾,

보고요구를 받은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²⁾.

개정안은 ①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②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를 감경하는 것임.

이는 2025년 9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중 경미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침³⁾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고·검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9.

행위자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①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는 달리, ②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행위자의 소극적 부작위에 불과하여 행정형벌로 처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동법상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사용업자의 96.6%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형벌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표 1> 특정물질 제조업·수입업·수출업 및 사용업 구성

특정물질 (비중)	분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냉매 (61%)	가전 자동차	4	8	-	12
	냉동공조	1	4	223	228
발포 (27%)	폴리우레탄	-	5	600	605
	XPS	-	2	26	28
	시스템하우스	-	7	20	27
소화 (6%)	소방산업	-	-	26	26
세정 (1%)	세정산업	-	1	30	31
분사제 (0.03%)	에어로졸	-	1	4	5
계		5	28	929	962
비중		0.5%	2.9%	96.6%	100%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한편⁴⁾,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하고 있음⁵⁾.

「형법」상 행위 후 법률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⁶⁾,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행정형벌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원칙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0

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